

1. 개 황

가. 총괄사항

- (1) 예산현액은 948,488,042,000원이고, 세입조정액은 976,484,978,075원으로
으로써 이중 총수입액은 953,988,981,527원, 총지출액은 660,275,623,853원
으로 차기이월액은 293,713,357,674원이다.
- (2)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639,985,911,182원이고, 총비용은 582,842,999,318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7,142,911,864원이다.
- (3) 대차대조표의 자산액은 4,848,693,323,304원이고, 부채는 176,514,719,097
원이며, 자본은 4,672,178,604,207원이다.

나. 의회의결사항

회 수	건 명	제출년월일	의결년월일
제17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02.22	2008.05.09
제34회 정례회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08.06.09	2008.07.09
제17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08.11	2008.09.09
제35회 정례회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11.10	2008.12.15

다. 행정관청인가사항 : 해당없음.

라. 직원에 관한 사항

○ 직원현황(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행정직	전산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청원 경찰
전년도말인원 (2007.12.31)	2,680	605	19	770	60	12	1,094	17	103
	2,704	610	19	752	53	12	1,166	17	75
기간중	1							1	
	33	2	1	8	4		8	1	9
	351	109		99			143		
	345	93	2	84	1	1	154	1	9
당년도말인원 (2008.12.31)	2,330	496	19	671	60	12	951	18	103
	2,392	519	18	676	56	11	1,020	17	75

※ 계약직원은 정관상 정원으로 포함된 인원을 말하며, 년중 계속고용자는 기타(사용인부)란에 기재하되, 시간급 등 수시공용하는 일용직은 작성제외

○ 행정직,기술직 직급별인원(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1,186	21	80	348	441	243	53
	1,213	20	76	349	518	165	85
행정직	496	10	31	124	201	111	19
	519	9	32	123	250	67	38
전산직	19			3	11	5	
	18			3	11	4	
기술직	671	11	49	221	229	127	34
	676	11	44	223	257	94	47

○ 관리자의 변동에 관한 사항

- 2007.12.31자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명예퇴직
- 2008.1.1자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 발령

마. 조례 및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제4674호)

- 공포일자 : 2008년 9월 30일

- 개정이유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 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 신설

- 주요내용

- 현행 제2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제4639호).

- 공포일자 : 2008년 5월 29일

- 개정이유

- 수도요금을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체이율이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에 비해 높아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1개월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가산이율을 인하 및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증가산금 부과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산금”의 용어를 “연체금”으로 변경하고,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비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1개월에 한하여 부과하며, 증가산금 부과제도는 폐지함.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제4661호).

- 공포일자 : 2008년 7월 30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요금 업무의 전산화와 급수공사의 물량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상수도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11개 수도사업소를 8개 수도사업소로 통·폐합하고 관할구역과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 폐지 수도사업소 : 서부, 성북, 영등포, 명칭변경 수도사업소 : 은평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

〈개편된 관할구역별 사업소명〉

구분	사업소명	위치	관할구역
수도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길 129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서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왕산길 25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문화원길 16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북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강서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동로 125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남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약샘길 107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남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길 237	강남구, 서초구
	강동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길 51	송파구, 강동구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628호).

- 공포일자 : 2008년 8월 4일

- 주요내용

〈본부〉

- 경영지원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경영과·홍보과·경리과·창의과 및 아리수판매과를 두고,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생산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기전설비과 및 기술진단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술진단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급수부에 계획설계과·배수과·시설과·급수설비과 및 계약심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수도사업소〉

- 중부·서부·동부·강서·남부수도사업소에 고객지원과·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고, 북부·강남·강동수도사업소에 고객지원과·요금과·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둔다.
- 고객지원과장 및 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현장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운영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중부·서부·동부·강서·남부수도사업소에 고객지원과·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고, 북부·강남·강동수도사업소에 고객지원과·요금과·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둔다.
- 고객지원과장 및 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현장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운영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상수도연구원〉

- 상수도연구원에 총무과·심사평가관·수질연구부 및 기술개발부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심사평가관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수질연구부장 및 기술개발부장은 지방보건연구원·지방환경연구원 또는 지방공업연구원으로 보한다.
- 기술개발부에 수처리과·고도정수처리과·배급수과·수운용과·하수처리과 및 하수계획과를 두며, 수처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연구원·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고도정수처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배급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수운용과장 및 하수처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원 또는 지방보건연구원으로, 하수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연구원으로 보한다.